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으로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한 것이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시행에 필요한 의무량 산출기준, 재활용단위비용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하고,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폐전기·폐전자제품을”을 “폐합성수지류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이하 “특정 제품”이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해야 하는 양은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15조의6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6항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환경부장관이 특정 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특정 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무이행 전년도에 모든 특정 제품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에 해당 특정 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비율

제15조의6제4항(중전의 3항) 중 “총 매입량”을 “총 매입량(제품군별로
구분한다)”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별표 3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태양광 패널	kg당 727원	kg당 94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
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
조의2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의6, 별표 3의3 마목 및 별표 3의4
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

출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4]

특정 제품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제15조의2제7항 관련)

특정 제품의 회수 여건을 고려한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text{의무이행연도 이전 최근 3년간 폐제품 발생량 평균값} \times 85\text{퍼센트} \times (1 + \text{조정계수}) \} \times \text{의무이행 전년도}의 \text{특정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특정 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출고량 비율}$$

비고

1. 폐제품 발생량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단에 등록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해지 또는 교체한 전력량을 합산하여 산
정한다.
2. 조정계수는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을 조
정하는 정도를 말하여, 그 범위는 - 0.05 이상부터 +0.05이하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 기준)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u>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u>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에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에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에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u>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u>)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u> ----- ----- ----- <u>포함</u> <u>한다</u>) 및 법 제16조제4항----- ----- ----- ----- ④ ----- ----- ----- ----- ----- <u>폐합성수지류를</u> ----- ----- -----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의6(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생략)

<신설>

----- 제출해야 ----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이하 “특정 제품”이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해야 하는 양은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15조의6(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6항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특정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특정 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 <u>총 매입량</u>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u>고시하여야</u> 한다.	<u>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특정 제품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특정 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비율</u>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총 매입량(제품군별로 구분한다)</u> ----- ----- <u>고시해야</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4